

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

[19진정0728300 등 15건,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제한]

□ 권고 내용

○ 법무부장관에게
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도서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‘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’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.

□ 검토 의견

-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용함

□ 이행 계획

- 「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」 시행 중지 지시 (2020. 12. 1. 시달)
 - 2020. 12. 7. 부로 전국 교정기관에 「수용자 우송·차입도서 합리화 방안」 시행중지 지시함.

※ 별첨 : 「수용자 우송·차입도서 합리화 방안」 시행 중지 지시 (전언통신문)